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31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어기구 · 조인철 · 김병주
박용갑 · 박군택 · 임호선
김태선 · 이개호 · 권향엽
이상희 · 김주영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상환경 악화, 수입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철강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조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 내 산업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주된 산업’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원 시기가 최대 2년으로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지정기간, 지정절차”를 “지정절차”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생략)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 ⑨ (생략)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⑨ -----
-----지정절차-----
-----.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 ⑩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4항-----
-----.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